KVCA MONTHLY MAGAZINE vol.141

VC Discovery



이달의 VC人 Zoom-In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법·제도 Q&A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3
2020 MARCH



심의 경계

지상의 풍경이 어지러워도 우주는 같은 중력으로 우리의 별을 움직이고,
어느덧 피부를 스치던 한기가 훈풍으로 변하여 다소곳이
제자리를 지킨 채 봄 가에 찾아와 서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찾아온 좋지 않은 손님으로 나라 안팎이 모두 어수선한 시기네요.
모두 혼란한 시기 건강관리 잘하시고들 계시지요?
요즘의 사태로 많은 회사와 가게들이 거시적인 휴식과
재택근무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자라면 위기를 기회 삼아 모처럼 얻게 된 황금 같은 이 시간을
더욱 값지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지요.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걸음을 늦추어 잠시 정체를 맞이한 이 날에, 도움이 될만한 싯구를 하나 곁들여봅니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이윽고 봄이 만연하였을 때, 피어나는 새순과 꽃봉오리들과 함께
조금 출발이 늦춰진 올해의 계획들도 모두 활짝 피어나 건강하고
싱그러운 호흡을 마음 편히 누리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이 날도 곧 무더위 속 어느 날 뒤 돌아보면
과거의 편린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추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름의 들숨이 오늘날의 그것보다 편안하고 당연하기를.
庚子年 3月. 유난한 고요의 경칩을 배웅하며.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2020 March | Vol.141

CONTENTS

Market Trend
04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Investment Insight
06 이달의 VC人 Zoom-In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09 법·제도 Q&A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7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임스 와트의 부활

With Startup
21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M&A 지원센터

KVCA & Members
26 KVCA 소식
- 벤처투자촉진법 관련 업계간담회 개최
-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기부

27 회원사 소식

30 Epilogue









발행일 2020년 3월 10일(통권 141호 3월) | **발행인** 정성인 | **편집인** 오세현 |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 **홈페이지** www.kvca.or.kr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0년 국내 블라인드 펀드(PEF)

항목	세부내용
출자 규모	• 총 1,500억원 (3개사 이내 운용사 선정)
접수마감	• 2020년 2월 28일(금), 14:00까지

한국벤처투자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항목	세부내용	
출자 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등
	• 총 9,000억원	총 2,930억원 (문화 1,460억원, 영화 310억원, 관광 300억원, 스포츠 100억원, 과기정통 220억원, 환경 200억원, 해양 200억원, 국토교통 100억원, 고용 40억원)
접수마감	• 2020년 3월 12일(목), 14:00까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은행권일자리펀드(2차)

항목	세부내용
출자 규모	• 총 1,000억원

구분	선정 운용사수	운용사별 출자금액	최소결성금액	출자비율
루키리그	2개	125억원	200억원	62.5%이내
일반리그	3개	200억원	500억원	40.0%이내
해외리그	1~2개	개별협의	개별협의	개별협의

접수마감	• 2020년 3월 31일(화), 14:00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020년도 정기 출자사업

항목	투자분야	개수	모태최대 출자비율	최소 결성규모(단위 : 억원)		
				모태펀드	민간출자	결성총액
출자 규모	농림축산식품	1	50%	150	150 이상	300 이상
	농식품벤처	1	80%	100	25 이상	125 이상
	마이크로	1	80%	50	12.5 이상	62.5 이상
	징검다리	1	70%	150	65 이상	215 이상
	수산벤처창업	2	80%	240	60 이상	300 이상
계		**6**	-	**690**	**312.5 이상**	**1,002.5 이상**
접수 마감	• 2020년 3월 31일(화), 15:00까지					

서울산업진흥원

2020년 상반기 서울시 출자사업 공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재도전, 바이오 총 6개 분야 중 1개 지원 가능)

항목	세부내용							
출자 규모	세부분야	총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문화 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 지원	바이오
	출자 예정금액	244억원	50억원	50억원	26억원	48억원	30억원	40억원
접수마감	• 2020년 3월 27일(금), 18:00까지							

군인공제회

2020년 국내 블라인드펀드(PEF 및 VC) 운용사 8곳 선정

군인공제회는 총 1,300억원 규모의 펀드(PEF 1,000억원, VC 300억원)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 초 제안서를 접수 받아, 2월 말까지 프리젠테이션을 비롯한 내부 평가, 운용사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운용사 8곳(PEF 분야 5곳, VC 분야 3곳)을 선정했다. PEF 분야는 케이스톤파트너스, 아주IB투자,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KTB PE,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이며, VC분야는 미래에셋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SV인베스트먼트이다. 선정된 각 운용사 및 펀드 형태별로 100억원~2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 3월호 인터뷰는 코로나19 위험으로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VC 人 Zoom-In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

Q 「이달의 VC인 Zoom-In」코너에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벌써 3월이 됐는데 첫 스타트는 잘 끊으셨는지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겹게 3월을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프트뱅크벤처스도 1월 말 북경 지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원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초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내



〈사진제공 = 동아일보〉

포트폴리오사들의 여러 가지 긴박한 이슈들을 원격에서 지원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최근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포트폴리오사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절반 이상의 시간이 북경의 중국 법인 및 동남아시아 출장들로 채워져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최근 모든 출장이 전면 금지되면서 그 동안 밀렸던 한국에서의 일들도 정리하고 인사드리지 못했던 분들께 안부도 여쭈면서 동시에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저희 생태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Q 올해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한 가지씩만 꼽자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좋은 회사들을 많이 발굴하고 열심히 투자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작년 말에 큰 규모의 펀드 결성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성된 펀드의 목적에 맞게 시장 혁신 기업, 그리고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사무실을 포함하여 각 해외 지사의 투자 인력도 보강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며 다양한 투자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예측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인하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보수적으로 갖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좀 더 챙겨보고 환경적 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들을 살펴보며 신규 투자의 속도를 조절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번 재택근무를 계기 삼아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보려고 합니다. 창업가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오다보니 가족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 했던 Yahoo의 창업자인 Jerry Yang이 저녁 식사를 하며 저에게 들려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막대한 성공의 끝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일이니 지금부터라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백발이 된 Jerry Yang이 들려준 이 이야기와 함께 최근 여러 투자자 선배님들께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이 후회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올해는 가정에도 최선을 다해 충실하고자 합니다.

Q 협회는 VC업계의 대변인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대표님께서 최연소 협회의 이사직을 맡게 되셨는데 협회와 함께 업계의 어떤 측면을 개선해 가시고 싶으신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벤처캐피털협회 협회사 대표님들과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투자해 오신 협회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워가며 협회에도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에 뿌리를 두고, 중국, 동남아, 미국, 이스라엘 등의 자체 투자 인력들과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보니, 우선적으로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협회사 분들께 다양한 산업 동향이나 투자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좋은 창업팀들이 한국의 벤처캐피털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까지 와서 IR을 진행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어, 한국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털사에도 해외 투자 기회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협회사 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틀을 바꾸는 혁신 사업이 쉽지 않은 한국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는 유사 해외 사례 혹은 연구 자료 등을 협회를 통해 국내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공유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산업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이 환경적인 사유로 좌절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모델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산업의 혁신을 시도하는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좌절하며 창업을 기피하게 된다면 한국 창업 생태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업가 시절 기술을 통한 기존 산업의 혁신이 얼마나 뼈아프게 어려운 일인지를 직접 겪었던 터라 이

런 환경의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창업 시 투자를 받았던 회사의 대표직을 맡게된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죠. 그 간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일과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아직까지는 투자자보다는 창업가로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기에 지금도 투자 활동을 하면서 창업가 분들의 관점으로 자주 빙의가 되고는 합니다.
KAIST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학과 동기, 후배들과 함께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여 소프트뱅크(커머스코리아) 문을 두드린 지도 거의 18년이 다 되었습니다. 20년 전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에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이사에 오르셨던 문규학 대표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강동석 부사장님께서 당시 초라했던 저의 대학생 창업팀을 문전박대 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큰 독려를 해주신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공동창업자로 참여 했던 두 번째 회사인 엔써즈와도 창업가-투자자로서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엔써즈는 KT와의 부분 인수 합병을 거쳐 미국의 Tribune Media Group에 최종적으로 매각되었고, 저는 이 매각 작업을 끝으로 창업가 생활을 일단락하고 KAIST에 내려가 후배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문 대표님께서 이번에는 투자자로서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셔 2015년에 소프트뱅크벤처스에 투자자로 입문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스타트업에 합류한다는 마음으로 창업가처럼 투자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처음 창업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투자자로서 시작했던 그 시기는 정말로 가슴이 뛰고 설레였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 창업 했던 회사를 문 닫던 날이 가장 가슴이 아픈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에 가득차서 젊은 20대 시절을 바쳤던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믿었던 동료, 후배들이 떠나가고 어렵게 혼자 남아 회사에 남아 있던 소프트웨어 재고 패키지들을 비오는 날 쓰레기장에 여러 시간 동안 나르던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자주 곱씹으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일인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창업자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궁극적으로는 어떤 VC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싶으신지요? VC디스커버리를 구독하는 업계 구성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벤처캐피털이 되고자 합니다. 비록 기존 산업을 크게 변화 시키는 혁신 사업에 도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는 훌륭한 창업가들과 벤처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께서 혁신 사업의 장을 한국 시장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도 다수의 위대한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도 그런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Q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미

- 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의 내용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측면에서 부수적 사업으로 벤처캐피탈을 바라보는 관점
- 동법 제정으로 독립된 금융산업으로서의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여(「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
- 독립된 벤처투자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1.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법 제9조)

-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 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

2.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법 제13조)

1)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의 50%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 범위** 일정 비율 이상만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 이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상장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 투자할 수 없다.

1.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종전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 투자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과 각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기준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제38조 및 제42조)

1)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을 기준 각각 50%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후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을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 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직무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3) 행위제한 등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업종제한 규정과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규정 삭제? : 업종제한은 기 폐지, 금융기관 주식 취득제한은 추후 시행령 제정과정 확인 요망 VS 신기술사업금융?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조건 대비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삼자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 건전성 기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영 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자금차입 등)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등(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2) 종전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일반법인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가능성? VS 신기사의 경우?(금융위 유권해석 有)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규정한 사항 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벤처투자조합은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의 50%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 이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 제1항에 따른다.

※ 제38조 제1항: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 이후까지 출자금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금액 이상을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한 용도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④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⑥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추후 제정될 시행령, 시행규칙 확인 반드시 필요 :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및 그 예외, 거래 개념 등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글은 외부 기고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임스 와트의 부활



정성창

대표이사 겸 연구소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UST)
초빙교수(지식재산과 기술혁신)

필자는 대전에서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다. 연구소는 기업의 혁신전략, 지역 생태계,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특허제도 경제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신산업과 지식정보혁명'(2001, 공저), 지식재산 전쟁(삼성경제연구소, 2005, 단독), 기업 간 추격의 경제학(2008, 공저) 등이 있다.

2019년 한 해 영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은 제임스 와트였다. BBC는 제임스 와트의 일생을 다시 조명했고 런던 과학박물관은 와트의 소장품과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와트에게 실험실을 제공한 글래스고 대학은 '제임스 와트 공대'로 간판을 아예 바꾸어 달았다. 갑자기 왜 제임스 와트인가. 2019년은 와트 사후 200년, 증기기관 특허 발행 250년이 되는 해였다. 4차 산업혁명 초입에서 영국이 와트의 후손 찾기에 나선 것이다. 와트는 영국인에게 위대한 발명가 그 이상이다. 와트 이전 영국의 영웅은 정치인이나 장군이었다. 와트는 이들 정치인이나 장군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영웅 대접을 받는 엔지니어이자 발명가, 기업가였다. 2019년 와트를 조명하는 영국 미디어 앵글은 '타고난 영웅'이라는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르다. 와트가 누구를 만나서 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혁신의 비밀을 살핀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평범한 청년으로 시작했다.

와트, 글라스고 대학에서 창업

제임스 와트는 1736년 글래스고 지역의 그리녹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사업은 번



창하지 못했고 17살이 되던 해 모친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린 와트는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운명을 개척해야만 했다. 1755년에는 수학 도구제작 일자리를 찾아서 런던으로 떠났지만, 런던의 도구제작업자들은 그가 7년의 도제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런던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했고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선전포고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와트에게 일자리는 내준 것은 글래스고 대학이었다. 글래스고 대학은 그에게 수학 도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중세의 대학이 외부인에게 이런 대우를 해 준 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와트는 이곳 글래스고 대학에서 6년 동안 악기, 장난감 등을 제작하는 일을 도맡았는데, 성실하고 또한 손재주가 좋아 대학 내에 호평이 자자했다.

로벅(John Roebuck, 1718-1794), 증기기관 연구개발에 투자

1763년 무렵 글래스고 대학은 실험용으로 사용하던 뉴커먼 증기기관 수리를 와트에게 의뢰했다. 뉴커먼은 와트가 태어나기 이전 시절을 살았던 발명가이다. 증기기관은 석탄 광산에서 침수된 갱도의 물을 퍼내기 위한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와트는 이 엔진이 소모하는 석탄량 대비 열효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곧 이 엔진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명에 착수하여 초기 4년 동안 1,200파운드의 연구비를 자비로 충당했다. 빚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의 1인당 GDP가 20~30파운드 정도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비가 부족한 와트는 연구를 중단해야만 했다. 와트의 증기기관 연구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로벅이었다. 로벅은 와트의 부채를 떠맡고 증기기관에 필요한 연구자금을 지원했다. 대신에 특허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2/3는 자신이 가지기로 했다. 로벅은 증기기관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의 자택 근처에 작업장을 마련해 주었다. 와트는 개량된 증기기관의 모형을 완성하고 1769년 증기기관 특허를 확보했다. 이어 첫 번째 증기기관을 탄광에 설치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실패했다. 게다가 로벅은 자금난이 가중되어 파산해 버렸다. 불행은 이어졌다. 와트의 성공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내마저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다. 와트는 절망했고 삶의 길을 잃었다. 그는 증기기관 발명을 후회했다.

벤처투자가 볼턴(Matthew Boulton, 1728-1809), 증기기관 상용화에 투자

희망을 잃은 와트에게 손을 내민 것은 매튜 볼턴이었다. 볼턴은 버밍햄에서 유럽 최대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는 과학을 사랑한 계몽운동의 선구자였으며 벤처투자가였다. 볼턴은 로벅에게 로벅이 진 빚을 탕감해 주고 와트의 발명으로부터 수익이 나면 천 파운드의 프리미엄을 주기로 했다. 대신에 와트의 특허지분을 인수했다. 볼턴은 경영 수완이 좋았고 와트는 기계제작에 능하여 두 사람은 환상의 파트너였다. 이 환상적인 팀은 1774년 '볼턴 앤 와트'를 설립하고 증기기관 특허 기간 연장에 착수했다. 와트의 증기기관 특허는 보호 기간 14년 중에서 이미 6년이 지나 버린 상태였다. 증기기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새로운 증기기관을 완성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1775년 와트와 볼턴은 의회에 증기기관 특허연장을 신청하였다. 의회는 특허권 연장을 허락하고 증기기관 법(Steam Engine Act)까지 제정해 확실하게 밀어주었다. 두 사람은 증기엔진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와트의 증기기관은 1776년 마침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1763년 와트가 뉴커먼 증기기관을 처음 접하고 1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와트의 증기기관은 섬유와 철도산업 등에 이용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와트와 볼턴도 증기기관 사업

이 번창하면서 풍요로운 여생을 보냈다.

인공지능 전성시대, 와트의 DNA 가진 스타트 업 발굴을 기대

지금의 4차 산업혁명과 250년 전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닮은 면이 많다. 먼저 특허 건수 동향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와트가 증기기관에 대한 원천기술을 발명하고 상용화하던 시절인 1761년에서 1800년 사이의 40년 동안 증기기관 관련 특허는 130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특허 건수는 1801년에서 1850년 사이 50년 동안 12배 가까운 1,589건으로 급성장했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는 2006년 8,518건에서 2017년 55,660건으로 12년 동안 6.5배로 증가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가속 현상이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는 연간 8% 성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연간 28%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수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응용 측면에서도 닮은 면이 있다. 증기기관은 석탄 광산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후 방직공장, 공작기계 제조업, 증기기관차, 증기선 등으로 확대되었다. 지금 인공지능은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네트워크 등은 물론이거니와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와 서비스 산업에까지 침투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 응용할지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암시한다.

투자 측면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있다. 증기기관의 혁신에서 로벅은 엔젤의 역할을 했고 볼턴은 VC의 역할을 했다. 지금 미국의 VC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유망주 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벤처 캐피털 정보업체인 CB 인사이트가 발표한 '2019 AI 스타트업 100'에 따르면 62개의 스타트 업이 600건 이상의 미국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 씨앗을 골라내는 벤처투자가의 역할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다시금 중요해진 시대다.

로벅과 볼턴과 같은 매서운 눈을 가진 우리 VC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와트의 DNA를 가진 스타트 업을 많이 발굴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019), WIPO Technology Trends 2019 - Artificial Intelligence.
Andrew Ede(2019), Technology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d Philip Miller(2018), The Life and Legend of James Watt,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Sean Bottomley(2014). The British Patent System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1700-1852.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n Russel(2014), James Watt : Making the World Anew, Reaktion Books and Science Museum.
William Rosen(2010), The most powerful idea in the World : The story of Steam, Industry and Innov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hard Sullivan(1989), England's "Age of Invention" : The Acceleration of Patents and Patentable inventio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6, pp 424-452.
https://www.bbc.com/news/uk-scotland-glasgow-west-49459074(2020.2.15, 방문)
https://www.universitystory.gla.ac.uk/biography/(2020. 2. 15, 방문)
https://jameswatt.scot/2019/04/29/sciencemuseum/(2020. 2.15 방문)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artificial-intelligence-top-startups/(2020. 2. 22, 방문)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제3차 투자 IR 데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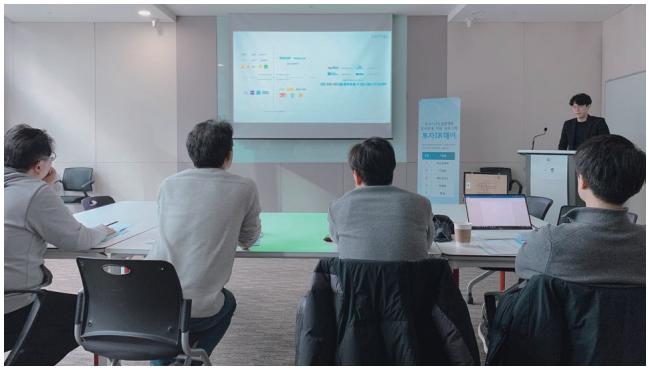
본 회는 2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제3차 투자IR데이'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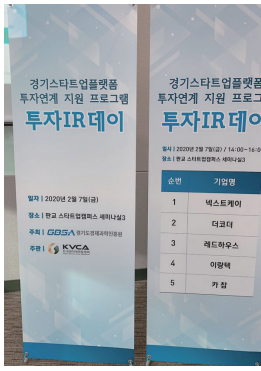
VC심사역의 기업평가를 거쳐 최종 5개사를 선정했고, 선정된 5개사는 1:1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IR 피칭스킬 등의 컨설팅을 받았다. 총 3회의 컨설팅을 거친 기업들은 투자컨퍼런스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IR데이'에 참가 했으며, 최고점을 받은 '레드하우스'가 이달의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의 통합 참여형 플랫폼으로 투자파트너사로 등록하면 관심기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방법**

- 등록대상 : VC 협회 회원사
- 신청접수 : 이메일 제출(joohyun@gbsa.or.kr)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제출서류 양식은 문의처에 개별요청)
- 문의처 : kyr12@kvca.or.kr





벤처투자 사랑방

2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 회는 2월 18일 '2월 벤처투자 사랑방(마트)'을 개최했다. 이번 벤처투자 사랑방은 슈닥 등 중소·벤처기업 18개사와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했다.

벤처투자 사랑방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엔젤투자마트와 통합 신청을 받고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자금조달 전략수립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투자유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M&A 지원센터

2020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지원센터)
- 시 기 : 2020. 2월 부터 연중 수시
- 대 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거래 정보망 등록 자문기관
- 예 산 : 617백만원 ※ M&A 상담·자문 및 성사보고 지원 : 1.5억원
- 지원내용 : 상담자문 지원, M&A 최종성사 지원, 매칭행사 개최

2. 세부사업 내용

1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M&A 관련 세무·회계·법률 등의 자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등록 M&A 자문기관
 *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매수·매도기업으로 등록된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M&A 희망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물건발굴, 기업실사(가치평가), 계약서 작성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 상담·자문계약 1건당 최대 7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년도 자문기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등급(S~B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절차 :** 자문 완료 후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와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하면 만족도 평가결과(60점 이상 지원)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 M&A 희망기업은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과 사전 자문계약 체결

2 M&A 최종성사 지원

- **지원대상 :**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등록된 우수물건과 상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M&A를 성사시킨 M&A 자문기관
 * 우수물건은 M&A 매칭행사에 참여한 기업물건 중에서 자문기관이 성장성, 수익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 **지원내용 :** M&A 매칭행사에 참여한 자문기관 추천 기업이 매칭상담 이후 M&A가 최종 완료되었을 경우 Deal 성사에 소요된 비용 일부 지원
 * 성사보고 건에 한하여 1건당 10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주주, 경영권, 성사방식 등 Deal 관련 정보 협회 제공 필수
- **신청절차 :** M&A 성사보고 지원 신청서(붙임2) 및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하고, M&A 성사 결과보고서 및 성사 입증서류 확인
 * 선정기준 : 매칭행사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M&A 성사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

3 M&A 매칭지원 및 인식개선

- **지원대상 :** 국내외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 M&A 매칭 상담회 개최, M&A 정책홍보·인식개선
 - 기술가치 평가기업, 크로스보더 M&A, CVC 및 VC 피투자기업 관련 M&A 매수·매도기업간 IR상담회 개최
 * 참여희망 기업의 경우, Fact Sheet 등 회사 소개자료 작성 필요(개별안내)
 - M&A 거래정보망 운영, M&A 에센스 발간, e-뉴스레터(격월) 배포
- **신청절차 :** M&A 거래정보망 자발적 등록, 자문기관·지원센터 추천, 운영기관 선정 등으로 인해 발굴된 기업 별 개별 신청

3. 신청 문의

- 2020.2월부터 연중 수시 신청접수
 * 상담자문비용 지원 등은 예산 소진시 지원이 마감
-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지원센터
- **TEL :** (02)2156-2128, 2132, 2124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M&A거래정보망(www.mna.go.kr) ➔ 공지사항 ➔ 2020년도 M&A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M&A 전문 자문기관 지정·운영

- **신청자격** : M&A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중인 창투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Boutique 및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관 또는 M&A 중개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 M&A 지원센터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 **신청방법** : M&A 거래정보망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3) 및 첨부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 **선정기준** : 최근 3년 내 중소기업 대상 M&A 실적, M&A 거래정보망에 등록이 가능한 매도·매수 희망기업 보유 수,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평가
- **주요역할** :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M&A 거래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등
 * 지정 후 활동이 미비한 자문기관은 지정 취소 및 퇴출제도 시행

M&A 지원센터

2월 자문기관 매칭데이 개최

본 회는 지난 2월 20일, 2월 매칭데이를 역삼동 GS타워 25층 비즈니스센터 상담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M&A 매도 희망기업 2개사, 자문기관 4개사 등 총 6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매도 희망기업은 교육컨텐츠 플랫폼 개발 및 교육 기업, 치과, 안과 등 의료기기 분야의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자문기관 4개사와 1:1 매칭이 돼서 물건발굴, 전략, 절차 등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M&A 매칭데이는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M&A 희망기업의 실질적인 매칭지원을 통해 M&A 성공률 제고 및 M&A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중이다. 3월 26일 '기술혁신형 M&A 매칭데이'로 개최 예정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본회 M&A 지원센터(02-2156-2124, 2132)로 연락하면 된다.





’19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운영 성과

주요성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상장사, 투자기관 등 M&A 수요가 있는 다양한 주체가 교류할 만남의 장 확대

– 1:1 매칭상담(총 175회), IR 발표(30개사) 등 매칭 기회의 확대운영으로 M&A 성사 건수 꾸준히 증가

– 참가기업과 자문기관 간 총 22건*의 자문계약이 신규 체결, M&A 및 투자 기회 제고

*바이오테크 오픈이노베이션 데이(2건), 코스닥기업 M&A 매칭데이(7건), 상장사–중소벤처기업 M&A 매칭데이(5건),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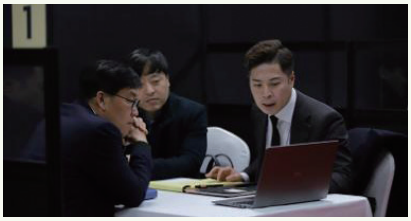

바이오테크 오픈이노베이션('19. 4)


코스닥기업 M&A 매칭데이('19. 6)


상장사–중소벤처기업 M&A 매칭데이('19. 9)


코스닥기업 M&A 매칭데이('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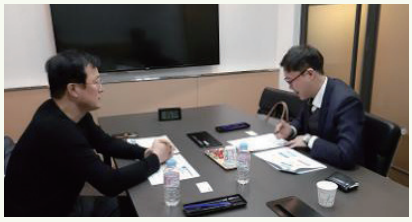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19. 11)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19. 11)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과 자문기관 간 M&A 추진전략, 물건발굴, 현장실사 등 1:1 매칭상담 진행(월 1회)

– 자문계약(NDA 포함) 체결 14건, 자문계약 체결검토 11건

*M&A 매칭상담 43건(매도·매수 희망기업 38개사 참여)


M&A 매칭데이('19. 2)


M&A 매칭데이('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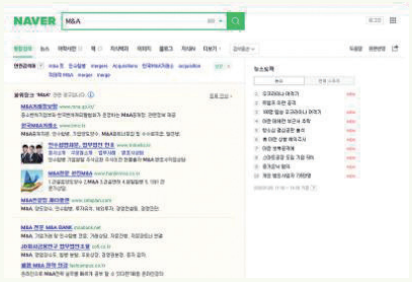

M&A 매칭데이('19. 7)


M&A 매칭데이('1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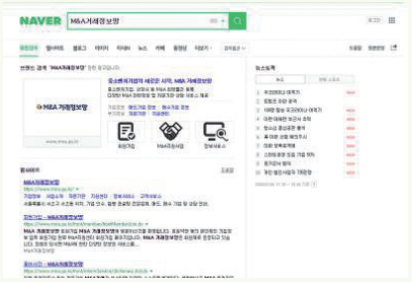

M&A 매칭데이('19. 9)


M&A 매칭데이('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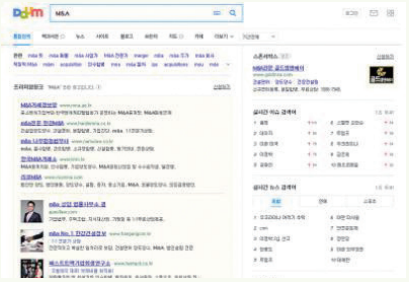
M&A 관련 키워드 및 브랜드 검색광고, 네이버밴드 등 온라인매체를 통한 주요이슈 공유, 언론사 칼럼 게재 등 M&A 인식개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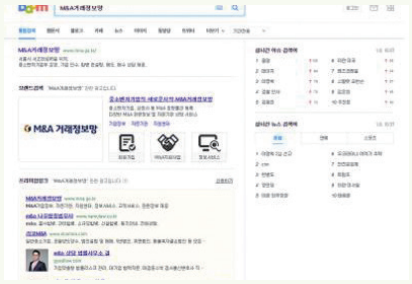
네이버 키워드검색



네이버 브랜드검색



다음 키워드검색



다음 브랜드검색



네이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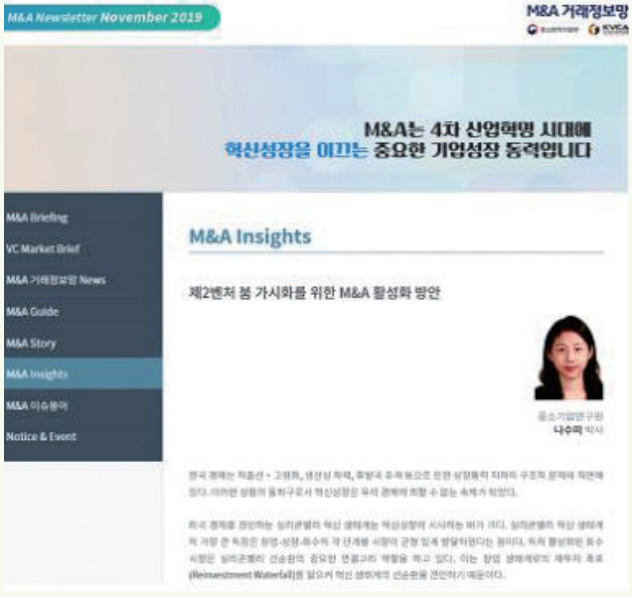
언론사 칼럼 게재

M&A 시장현황, 주요이슈, 전문가 칼럼 등 M&A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e-뉴스레터 발간(4회)

*VC, 지원센터자문기관,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 4,000여 명 대상 온라인 배포)



e뉴스레터 메인 페이지



전문가 칼럼

KVCA 소식

벤처투자촉진법 관련 업계간담회 개최

지난 2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투자촉진법 관련 업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VC 대표, 협회의 정책위원회 등 총 13명이 참석했으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반영할 정책을 논의했다.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2월 2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보고와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협회는 부회장단, 이사진 등의 핵심 임원을 새롭게 변경했다. 먼저 부회장단에 속해있던 이영수 송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세대교체를 이유로 사임을 표하며 감사인 지성배 IMM인베스먼트 대표가 새롭게 부회장단에 올랐다. 이로써 감사직에는 기존 이사였던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감사를 맡게 됐다.

이날 신규 선임된 협회 이사는 △김성태 IBK캐피탈 대표 △안신영 HB인베스트먼트 대표 △남기승 송현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서학수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7명이다.

협회는 업계의 지속 발전과 성숙한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사회와 함께 투자활성화 관련 정책건의, 사업운영 등 여러부분에서 소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기부

협회는 3월 9일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1억5천만원) 및 경북지사(5천만원)에 성금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협회 회원사(153개사) 및 사무국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내 방역 인력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원사 소식

네오플럭스

네오플럭스가 국내 벤처캐피탈 최초로 인도 시장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중이다. 현지에서 각 산업군별 탑티어를 위주로 투자를 단행해 유의미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최근까지 인도 현지 기업 6곳에 114억원을 투자했으며 전체 해외 포트폴리오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벤처펀드는 주목적 투자 분야가 정해져있지만 비목적 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투자가 가능해, 총 3개의 펀드로 6개의 포트폴리오를 펀드의 비목적 투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다. 네오플럭스는 연내 인도 투자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성창업투자

대성창업투자가 100억원 규모의 여성펀드 '대성 W-Jump up 투자조합' 결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간다. 한국모태펀드가 60억원을 출자했고 유한책임출자자(LP) 1~2곳을 확정해 투자 재원 10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대성창업투자는 13번째 펀드가 결성되면서 운용자산(AUM)은 3,3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펀드명처럼 주목적 투자 대상은 여성기업이며, 혁신기술분야(테크산업), 트렌드 선도 분야인 뷰티, 생활서비스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등에 60% 투자할 계획이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운용자산을 3,000억원까지 늘리고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상장을 위한 준비중이다. 올해 최소 1,000억원대 펀드 결성에 나설 예정이며 8개 펀드 중 지난해 결성된 코리아임팩트투자조합을 제외하고 모두 투자비율을 50% 이상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 PE 투자에서도 운용규모를 키울 경우 내년 안에 전체 AUM 3,0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투자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자금을 유치해 사업 활로를 넓히기 위함이라 알려졌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벤처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 정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의 운영사가 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설립 1년~5년 이하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투자를 집행한 업체는 총 3곳이다. 이 가운데 설립 1년~3년 이하 기업 1곳에 10억원, 3년~5년 이하 기업 2곳에 35억원을 투자했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합은 총 6개며, 이 가운데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위해 조성된 것은 'DTNI-스타트업 창조성장 투자조합', 'DTNI-창업초기 혁신 투자조합' 등 2개다.

아이디벤처스

아이디벤처스가 2본부 1실 5개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에 5개팀 체제에서 전략투자본부, 벤처투자본부 2개 본부, 리스크관리실을 신설했다. 특히 본부장제를 도입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으며, 투자·관리 조직을 모두 강화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많아지고 AUM이 2,100억원을 돌파하며 규모가 커지자 투자팀을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인센티브 제도인 PS(Profit Sharing)제도도 확립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 등도 함께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인력 보강도 이뤄질 전망이다.

IMM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가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기존 운용중인 최대 규모 펀드의 약정총액을 2배정도 뛰어넘는 2,3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펀드 결성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IMM인베스트먼트가 이번 펀드 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설립 후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펀드레이징은 정일부 투자부문 대표(CIO)가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벤처펀드인 2018 IMM 벤처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인 정일부 대표는 후속 펀드에서도 대표펀드매니저로 활동할 예정이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설립 후 최대 규모 벤처조합 결성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펀드레이징에 나선 결과 주요 출자자들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1000억원대 펀드 조성에 성공했다. 이번 펀드 결성으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전체 운용자산(AUM) 규모는 기존 3,3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이강수 부사장이 맡고, 핵심운용인력으로 황유선 부사장, 변준영 이사, 김우영 이사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와 성장 단계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심사역들로 꾸려졌다는 평가다.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는 올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내달 중 결성되는 프로젝트펀드는 베트남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키움인베스트먼트는 현재 10곳 미만의 해외 기업에 투자했으며, 투자 규모나 기업 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키움인베스트먼트가 해외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된 건 '휴즈'가 기폭제가 됐다. 키움인베스트먼트는 '키움문화벤처제1호투자조합'을 통해 2016년 폴란드 게임업체인 휴즈에 투자를 단행한바 있으며, 우리기술투자, 키움인베스트먼트, 서울투자파트너스가 총 450만 달러(약 51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톤브릿지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언론사 더벨이 주최하는 '2020 한국벤처캐피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 투자와 펀드레이징, 회수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면서 생태계 마중물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스톤브릿지벤처스를 비롯한 수상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국민연금공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주요 출자기관 7곳의 실무진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2년 만에 신규 펀드 결성 채비에 나섰으며 약정총액 목표치가 최대 5,000억원으로 설정된만큼 또 한 번 초대형 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이티넘인베스트가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벤처투자 업계 역사상 가장 큰 벤처펀드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티넘인베스트는 2017년 말에도 약정총액 3,500억원의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 2018'을 결성하며 단일 펀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했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가 올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펀드레이징에 돌입한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금액을 벤처투자에 할애했다. 올해 일반기업, 문화 콘텐츠 분야를 동반 성장시켜 운용자산(AUM)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8개의 벤처펀드를 결성하면서 AUM을 대폭 늘렸으며,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벤처펀드 AUM이 5,000억원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올해 투자 목표는 전년 수준인 500억~600억원 안팎이라고 전했다.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올 상반기 결성되는 벤처펀드의 출자자(LP)를 추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군인공제회의 VC부문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받는 100억원을 더할 경우 펀드 규모는 무난히 1,00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번 군인공제회 자금을 포함해 국민연금(300억원), 고용보험기금(200억원), 포스코(160억원) 등이 주요 LP로 참여하게 되며, 1,000억원 안팎으로 펀드가 결성될 경우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 중 두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운용 중인 4개 펀드 중에서는 '프리미어 Growth-M&A 투자조합'이 165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Epilogue

격려와 사랑이 담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들떴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일들도 한 번 되돌아보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VC Discovery〉도 분주한 일상 속의 작은 쉼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VC Discovery 3월호에 대한 후기 및 퀴즈의 정답을 작성해 담당자 newsletter@kvca.or.kr 로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퀴즈

Q OOOO는 공짜를 뜻하는 프리(Free)와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다.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이 나는 추가 사양을 제공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가 서비스에 대해선 유료화하는 가격 전략을 통칭한다. 2006년 벤처투자자인 프레드 윌슨이 처음 이를 비즈니스 모델화했는데, 당시 블로그 독자들로부터 모델 이름을 공모한 결과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의 컨텐츠 유료화를 비롯해 드롭박스의 파일공유, 플리커의 온라인 사진 공유, 판도라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 등이 이 정책을 모토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냈다는 평가다.

A OOOO

지난 호 정답 : TRS

이달의 VC 용어

D2C(Direct-to-Consumer)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온라인 자사몰로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의미하며 B2C (Business-to-Consumer)의 하위 개념이다. 지난 몇 년 간 온라인 쇼핑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년(78조원)부터 2022년(190조원)까지 매년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이슈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 반대급부로 식품유통, 패션뷰티, 리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통시장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패션의 경우 오프라인 기반 브랜드인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있다면 D2C로는 무신사, 지그재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출처 : 중앙일보





VC Discovery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VC Discover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VC Discovery〉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02)2156-2141 • FAX (02)2156-2110

• E-mail newsletter@kvca.or.kr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